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5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김예지 · 박덕흠 · 최수진
임종득 · 서명옥 · 김선교
김소희 · 김대식 · 송석준
이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되어,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는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명확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 행정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는바, 의료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하여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제66조의3에 따라 회원에 대한 징계”로 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중앙회 회원에 대한 징계) ① 각 중앙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앙회의 정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징계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며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에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반영하여 제6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내용을 각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회원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중앙회의 정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 ⑥ (생략)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 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생략)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6조의3에 따라 회원에 대한 징계----- ----- -----. ⑧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 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 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삭제> 제66조의3(중앙회 회원에 대한 징계) ① 각 중앙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7항 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

2. 중앙회의 정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징계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며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회는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에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반영하여 제6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내용을 각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